

수신인1 : 최예은 (노즐리플랜) 010-2234-1906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 53 트레피움 1차 2층 아이비코워크 5호실

수신인2 : 법무법인 원스 담당변호사 신 기 현

서울 강남구 삼성로 566, 2층 (삼성동, 빌딩엠)

발신인 : 윤민옥 010-7141-4186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646-30 2층 204-2호

제 목 : '저작권 침해 주장 및 합의금 요구에 대한 답변' 내용증명서에 대한 답변서

1. 귀 법인의 번영을 기원합니다.
2. 최예은을 대리하여 법무법인 원스 신기현 변호사님이 발송한 2023.1.5 일자 내용증명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며, 합의금을 정식 요청합니다.

- 다음 -

1. **노즐리플랜(최예은)이 작성한 글들은 저작권법 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인정한 사안입니다.**
 - 1) 2023년 1월 6일 <첨부1 : 성피연 카페 캡처 비교내용_일부>을 첨부하여,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한국저작권 위원회 법률상담관 이근화님의 소견으로는, 상당 부분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으며, 법적 구제 수단까지도 안내를 해 왔습니다. 이근화님은 저작권 침해 성립에 대한 전체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언급해 왔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타인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고(의거성), 2)원저작물과 창작적 표현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실질적 유사성)에 해당'

저작권위원회의 회신내용을 <첨부2 : 한국저작권위원회 답변>으로 붙여 드립니다.
 - 2) 내용증명서 3번 항목에 따르면 '소재 내지 주제 채택에 있어 유사한 점은 있으나, 그 소재 내지 주제를 표현하는 독창적인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유사성을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동일한 표현이 있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첨부3 :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는 부분 일부 정리>

변호사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예은이 작성한 저작물은 발신인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이 명백하며, 이는 침해자 최예은도 인정한 바 있고, 첨부 3에 명백히 나와있는 바와 같이, 표현이 동일한 부분이 매우 많아 실질적 유사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침해를 판단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침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저작권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의뢰한 결과도 마찬가지이며, 본 저작권 침해사안은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문제되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자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예은은 갑자기 변호사님을 통해 자신의 기존 자백과 달리 저작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의 고의침해를 스스로 자인하고도 만연히 침해를 부정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민형사상 책임을 운운하고 있어 이는 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접적 저작권 침해를 피해하기 위해, 모든 사진들의 교체 및 표현을 바꾸는 노력을 보였으나, 모든 글의 구성 및 참조된 원본 콘텐츠까지도, 그대로 윤민옥의 콘텐츠를 모방하여 재구성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3자의 시선에서도 명백히 판명이 되는 사항입니다. <첨부1>의 내용을 살펴보면, 글의 주제 및 글의 구성의 소제목까지도 모두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저작권전문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아 확인한 사항이며, 침해사실이 명백하여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노즐리플래(최예은)이 작성한 글들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노즐리플래이 작성한 포스팅을 보면, 타인의 노력이 포함된 저작물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행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노즐리플래(최예은)은 윤민옥이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유사한 경쟁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의 의뢰를 받아, 경쟁자의 네이버 카페에 2022.6.28부터 2022.8.9까지 포스팅을 지속했으며, 윤민옥이 네이버에 게시중단 신고를 한 2023.1.6까지도 콘텐츠가 소비되어 왔으며, 누적 조회수가 1500여건에 다릅니다.

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르면, 산정된 손해 배상액의 3배까지 부과 가

능하며 저작권자의 노력에 부당하게 편승하는 침해자를 일벌백계하는 최근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최예은과 같이 저작권 침해사실을 인정했다가 갑자기 침해를 부정하면서 부당한 내용증명으로 피해자를 겁박하는 자에게는 그 고의성과 손해의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가 더욱 인정될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역시 저작권 전문 변호사님에게 확인한 사안이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안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와 별개로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임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변호사님께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부1의 2page 내 각 포스팅의 제목 비교 참고>

3. 보내온 내용증명서 4번 항목에 따르면 '형사상 공갈(형법 제 350조)'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언급을 했는데,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피해자에게 공갈을 운운하거나 오히려 형사적 조치를 언급하는 것이 무고에 해당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발신인은 아무런 잘못없이 본인의 상당한 노력이 들어간 지적 재산을 고의로 침해 당했으며, 침해자도 이를 인정한 사항입니다. 합의금 및 형사고소 진행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발신인에게 당연히 부여된 권리를 주장 한 것이며, 귀 법인에서 보내준 판례나 통상의 고소위협에 대한 공갈 판례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사안이나 허위로 없는 사실을 꾸며서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안에 해당하며, 본 사안과 같이 저작권 침해가 명백하고 이를 판단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도 저작권침해를 인정한 사안에 관하여 공갈죄로 의율하지 않음은 너무도 자명한 사안입니다..

오히려 본 사안은 피해자가 실제로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 할 경우, 침해로 인해 산정된 배상액의 3배까지 청구 가능하며, 관련 변호사 비용 일체, 침해로 인한 손해 및 정신적 손해 배상금까지 청구가능 하다는 점을 변호사로부터 자문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본건을 소송까지 끌고가지 않기 위하여, 저작권 침해 관련 벌금 및 합의금에 대비해 매우 적은 수준의 금액을 침해자에게 요구하였으며 이는 침해를 자인한 최예은을 배려하고 조속하게 본건을 마무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그간 윤민옥은 합의금으로 제시한 '100만 원' 조차도 그 금액 100% 전액 기부할 것이며, 그 증서를 공개할 예정이라는 뜻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첨부파일 4 : 최예은(노즐리플랜) 문자소통내용> 중 19일차 문자 내용 확인)

금전적 이득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표현이었으며, 최예은님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언급이었습니다. 오히려, 법무법인을 내세워 '공갈미수'라는 단어와 '형사처벌'이라는 단어를 내세워, 윤민옥에게 내용증명서를 보낸 그 자체가 모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4. 노즐리플랜 최예은님 당사자가 직접 전화로 잘못을 인정하고 구두상으로 합의까지 한 정
황이 있습니다.**

최예은님은 2023.01.4. 17시경 약 20분 이상의 윤민옥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합의를 약속하기까지 했습니다. 잘못이 없다면, 문자에 응대하거나, 먼저 자발적으로 전화 통화를 위해 연락을 해올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이는 최예은님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자백으로 인정될 것이며, 갑자기 이를 번복하여 침해의 고의를 부정하고 오히려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침해자의 가벌성을 증대시킬 뿐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첨부5 : 최예은 통화녹취록_일부>

5. 본 건에 대해, 윤민옥은 노즐리플랜(최예은)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합의에 진행하지 않을 경우, 위에 언급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와 부당경쟁방지법을 바탕으로 민형사상 대응을 진행할 것을 밝힙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 민사재판 및 형사절차 진행 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공식 회신의견은 본 사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재판과정에서 침해여부 감정 시 결국에는 저작권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제 소송시에는, 해당 침해 사항에 대한 손해액 법정한도 3배, 관련 변호사 비용 일체, 본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등 배상금 일체가 청구될 것입니다.

본 내용은, 저작권 관련 변리사이자 변호사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귀하는 본 내용증명을 수신한 후 2023.1.17까지 윤민옥에게 본 내용증명 상의 합의금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일자까지 답변을 수신하지 못한다면,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며,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할 것을 알립니다. 끝.

발신인 윤민옥